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 2020. 2. 4(화) / 총1매(본문1)	
담당 부서 토지정책과		담당자 ·과장 남영우, 사무관 문영훈, 주무관 김재현 ·☎ (044) 201-3402, 3407	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한국경제, 2.3) >

- 매도 금액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구청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
-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정부의 감시 범위가 매수인 위주에서 최근 매도자까지 넓혀진 것과 관련해 지나친 월권이라는 주장이 제기

□ 실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결과,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○ 다만, 거래금액의 허위신고가 의심되거나, 매도인·매수인 간에 거래 신고된 내용 외의 추가적인 금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, 은행 계좌 거래가 아닌 현금 위주로 거래하는 등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매도인에게도 거래대금 지출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,

○ 이번 “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”에서도 일부 신고 관청이 이상거래에 대하여 실제 거래대금 지급여부의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매도인에게 거래대금 지출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.

□ 아울러 이는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등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문영훈 사무관 (☎ 044-201-340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